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08.6.20>

제 호		☐ 안전기준 초과승차 ☐ 안전기준 초과적재허가증 ☐ 차로폭초과차 통행			
성 명				생년월일	
주 소					
자동차의 종류		차 종		등록번호	
운행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	
운행구간		출발지 : 경유지 : 목적지 :			
허 가 내 용	적 재 용 량	길 이 :	cm + 초과	cm = 총	cm
		너 비 :	cm + 초과	cm = 총	cm
		높 이 :	cm + 초과	cm = 총	cm
	적재중량	적재정량 :	kg + 초과	kg = 총	kg
	승차인원	승차정원 :	명 + 초과	명 = 총	명
	차의너비	총 cm (차로폭보다 cm초과)			
허 가 조 건					
<p>「도로교통법」 제14조제3항 또는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○○ 경찰서장 인</p>					
주 의 사 항	<p>○이 허가를 받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, 길이 50cm이상의 빨간 형꺾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,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.</p> <p>○허가내용대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, 안전운행상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</p> <p>○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운행구간내 도로시설물(지하도·육교·교량·고가차도·신호기 등)이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</p>				

21026-37311민

210mm×297mm

95. 6.23 승인

(인쇄용지(2급) 60g/m²)